

大田直轄市第6回公債條例等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491
----------	-----

提案年月日：1994年 11月 日

提案者：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

1. 提案理由

- 公債條例는 新設道路鋪裝 및 擴張覆蓋工事等 道路施設에 所要되는 資金을 充當하기 위하여 制定하여 運用해오고 있음.
- 地方財政法이 1988. 4. 6 全文 改正된 바, 地方債 發行은 地方財政法 第8條의 規定에 依據 商法の 關係 規定을 準用토록 明示하고 있으므로 (條例 第11條) 公債의 時效와 關聯한 地方財政法 運用 條項을 改正코자 함.

2. 主要骨子

- 大田直轄市 第6回 公債條例, 大田直轄市 第7回 道路 公債條例, 大田直轄市 第8回 道路 公債條例, 大田直轄市 第9回 道路 公債條例 各 第11條中 公債의 元利金 請求權의 削減 時效에 대하여는 地方財政法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도록 함.

대전직할시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등중개정조례안

제1조 (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의 개정) 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제6조 제4항”을 “제8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(대전직할시제7회도로공채조례의 개정) 대전직할시제7회도로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제6조 제4항”을 “제8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(대전직할시제8회도로공채조례의 개정) 대전직할시제8회도로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제6조 제4항”을 “제8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(대전직할시제9회도로공채조례의 개정) 대전직할시제9회도로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제6조 제4항”을 “제8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 제11조 (공채의 시효) ----- ----- <u>제6조 제4항</u> -----	제11조 (공채의 시효) ----- ----- <u>제8조 제2항</u> -----
대전직할시제7회도로공채조례 제11조 (공채의 시효) ----- ----- <u>제6조 제4항</u> -----	제11조 (공채의 시효) ----- ----- <u>제8조 제2항</u> -----
대전직할시제8회도로공채조례 제11조 (공채의 시효) ----- ----- <u>제6조 제4항</u> -----	제11조 (공채의 시효) ----- ----- <u>제8조 제2항</u> -----
대전직할시제9회도로공채조례 제11조 (공채의 시효) ----- ----- <u>제6조 제4항</u> -----	제11조 (공채의 시효) ----- ----- <u>제8조 제2항</u> -----